

● 제28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18. 6. 1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269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안자 : 김태수·김상훈 의원(찬성자 9명)

나. 제안일 : 2017. 11. 13.

다. 회부일 : 2017. 11. 1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로 핵가족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현재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시대 접어들었고 반려동물 수가 500만 마리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일부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생명존중 의식이 부족하여 학대나 유기(1일 평균 260마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또한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서울시 차원에서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시민들의 동물생명존중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의무를 규정함 (안 제3조~제5조).
-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6조).
- 반려동물 실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반려동물 보호실현을 위해 자치구,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장려를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 조례안 우리나라 1인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생활패턴의 변화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수와 보유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반면, 일부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 부족으로 학대와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일한 상위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현행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이하 「동물보호조례」)에서 이미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 전체에 대한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반려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면에서 판단하건데, 「동물보호조례」와 대상이나 목적 등 상당 부분에서 중복될 소지가 있음.
-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3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먼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동물보호조례」와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입법의 경제성 차원에서 동일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자치법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자치법규로 제정하는 것이 법령과 자치법규의 통합성 및 주민의 이해 편의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동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 반려동물 관련 법규와 내용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조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받지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 국가, 지자체, 국민의 책무 -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 적절한 동물 사육 및 관리 - 동물학대 등의 금지 : 살해·상해·채액채취·사행·영상물 판매 - 동물의 운송 및 운송방법 - 동물의 도살 - 동물의 수술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 동물의 구조·보호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시설기준·국가의 설치·운영비 지원·위탁기관·위탁비용 지급·센터 운영위원회·센터 운영기준 등 - 유실·유기·배회·학대신고 등 - 보호동물 공고·반환·보호비용 부담·소유권 취득 - 보호동물 분양기증·인도적 처리 등 - 출입검사 등 - 동물보호감시원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 등록 등 수수료 -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의무 - 동물복지계획 수립 -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변경신고 등 -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감독 등 - 동물의 구조·보호 - 보호동물의 공고·반환 등 - 보호동물의 관리 - 피학대동물 보호·관리 - 소요경비의 징수 : <별표 1> - 동물운송 및 인도적 도축 등 - 길고양이 관리 등 출입검사 등 - 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 - 동물보호업무에 대한 경비지원 등 - 등록수수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책무 - 시민의 책무 - 소유자 등의 의무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 협력체계의 구축 - 반려문화 조성 - 교육 및 홍보 - 표창

2 제정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본칙 11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근거를 마련하고,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및 반려문화 조성(안 제9호), 교육 및 홍보 (안 제10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의 구성 체계 >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제4조 시민의 책무
제5조 소유자 등의 의무
제6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 반려문화 조성
제10조 교육 및 홍보
제11조 표창
부 칙
제1조 시행일

3 주요사항 검토

□ 총칙 규정(안 제1조~제5조)

- 본 조례안은 총칙 규정에서 목적과 용어정의, 시장의 책무 및 시민과 소유자의 등의 의무를 명시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제정안에서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외에도 동물의 생명존중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를 포함한 시민의 책무까지 규정하는 등 반려동물 정책의 주요한 한 축으로서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며 소유자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음.
- 다만 반려동물을 정의하면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1)에서 정하고 있는 기니픽, 펠릿, 햄스터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등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정의규정이 상위법과 다소 상이하여 사업대상에 대한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바, 상위법과 통일시키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안 제6조, 안 제7조)

- 제정안에서는 5년을 주기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위한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① [별](#) 제32조 [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말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마련하고 있어 계획수립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초자료 확보가 용이하여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반려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 등(안 제9조~제10조)

- 제정안에서는 생명존중 가치관 함양,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및 여가문화 정착, 사람과 동물의 건강한 공존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반려동물 문화 공간 설치,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동물매개활동에 대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또한 반려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조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최근 잇단 개물림 사건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펫 티켓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 「동물보호법」이나 「동물보호조례」에 따른 강제적인 과태료 부과 외에,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사료됨.

4 종합 검토 의견

-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접어들면서, 서울시민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을 정도로, 이미 반려동물은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공존하고 있음.
 -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동 제정안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과 함께,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반려동물과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다만, 입법의 경제성 차원에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자치법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자치법규로 제정하는 것이 법령과 자치법규의 통합성 및 주민의 이해 편의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정의규정이 상위법과 다소 상이하야 사업대상에 대한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바, 상위법과 통일시키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